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내과학회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관리위원회는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조 (구성 및 임기)

1.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2) 부위원장 및 간사: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2. 관리위원회 산하에 내과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관리위원이 분과위원회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업무)

관리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1. 내과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진행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산하 분과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7. 연간계획 수립

제 5 조 (회의)

1. 관리위원회
   1) 일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내과분과위원회
   1)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6 조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